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

기 관 명	동.서.남.북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	설치일자	2020.05.01
급여종류	방문요양	정 원	없음
시 설 장	이영순	전 화 팩 스	043-237-0075 043-237-3999
주 소	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원팔봉길115(팔봉리)		
방문요양	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(세면, 목욕, 식사도움, 체위 변경 등), 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(취사, 청소, 세탁 등)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는 서비스		

■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・고시하는 「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【별표 1】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5년 기준)

(원)

년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025년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○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 비율

본인 부담금 내역	구 분	재가급여
	일반	15%
	기초수급권자	0%
	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취급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, 6%

○방문요양수가1회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른 비용

(원)

방문시간	30분이상	60분이상	90분이상	120분이상	150분이상	180분이상	210분이상	240분이상
방문요양수가	16,940	24,580	33,120	42,160	49,160	55,350	61,670	68,030
일반(15%)	2,541	3,687	4,968	6,324	7,374	8,303	9,251	10,205
감경(9%)	1,525	2,212	2,981	3,794	4,424	4,982	5,550	6,123
감경(6%)	1,016	1,475	1,987	2,530	2,950	3,321	3,700	4,082

가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50%를 할증한다.

나.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「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른 급여비용의 30%를 할증한다.

다. 한도액 초과로 이용 시 초과분에 대한 비용 전액을 부담 한다.